

<별표 1> 자체 보안성심의 기준 <개정 2015.9.17>

	심의기준
1	거래 당사자 인증
2	거래정보의 기밀성 및 무결성
3	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
4	고객 단말기 보호대책
5	정보유출 방지대책
6	이상금융거래 방지대책
7	시스템 가용성 확보 및 비상대책
8	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

※ 전자금융업무 유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심의기준 추가·수정 가능